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고 시장에게 위임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별표에 규정된 표창 디자인 및 공적조서 서식을 삭제하고, 서식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)
- 나. 그 밖에 목적조항에 있는 약칭을 다른 조문으로 이관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다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(2) 입법예고 (2019. 5. 16. ~ 6. 5.) 결과: 의견없음
 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시에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게는 각각 시장이 정하는 표창장,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”를 “시장에 정하는 공적조서”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<u>시에서</u>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에서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은 <u>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게는 <u>각각 시장이 정하는 표창장,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시 소속기관의 장,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<u>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1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-- ----- ----- -----<u>시장</u> <u>이 정하는 공적조서</u>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으로,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의 디자인과 공적조서의 양식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조례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 : 인사과 한 수 립 (2133-5729)